

## 현 장 검 증 신 청

사 건 2000가단000 손해배상(기)

원 고 000

피 고 ◇◇◇

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현장검증을 신청합니다.

## 다 음

1. 검증할 사실

원고들 경작농지의 상태 및 경작보리의 피해현황

2. 검증할 목적물

 ○○시
 ○○구
 ○○동
 ○○
 외
 4필지
 및

 ○○시
 ○○구
 ○○동
 ○○
 외
 17필지

3. 검증으로 명백히 하려는 사항

제초제의 사용으로 인한 보리피해의 현황

2000. O. O. 의 원고 OOO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 제○민사단독 귀중

				ō	
제출법위	원	수소법원	관 련 조 문	민사소송법 제364조 내지 %	
				366조	
제출부수	수	신청서 1부			
검 증 의	의	법관이 그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사물의 성상, 현상을 검			
의 의	의	사하여 그 결과를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임.			
검 증 의	의	검증의 대상이 되는 사물을 검증물이라고 하며, 검증은 자동차 사			
대 성	상	고현장, 각종 공사장 또는 기계로 인한 사고 현장 등			
		현장검증을 함에 있어서는 검증에 필요한 물건이나 사진기 등을 미리			
		준비하여야 함.			
[7] E	타	법원이 검증을 하는 경우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등 강제력을 행사			
		할 수 있고, 필요한 경우 경찰공무원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음(민사			
		소송법 제366조 제3항, 제342조 제1항).			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증거